

미인가탁아소 '시설신고' 싸고 마찰

구 청 “현 아동복지법 따라 신고해야” 91.7.4

탁아소 “새 시행령대로 경과조치 줘야”

탁아독립법으로 지난해말 제정·공포된 영·유아보육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보사부가 추진중인 미인가 탁아소에 대한 시설신고를 둘러싸고 관할구청과 탁아소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보사부의 행정지침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5개 시·도의 각 구청들은 지난 5, 6월 두달에 걸쳐 관할구역내 미인가 탁아소에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7월13일까지 시설신고를 마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신고마감 기한을 불과 열흘 남짓 앞두고 각 구청과 탁아소들이 마찰을 빚고 있는 부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안) 부칙 5, 6조에 규정된 경과조치 인정여부이다. 부칙 5, 6조에는 ‘미인가 탁아소가 영·유아보육법 시행에 앞서 신고할 경우 탁아시설로 인정, 3년 동안 시설 등을 보완할 수 있는 경과조치 기간을 둔다’고 돼 있다. 반면 현 아동복지법 시행령에는 경과조치 규정이 없고, 시설신고를 앞으면 폐쇄 또는 1년 이하의 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다.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규정 때문에 신고를 접수해야 하는 구청 쪽에선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받는 것이므로 경과조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탁아소 관계자들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안) 부칙대로 경과조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국 70개 비영리 민간탁아소들의 연합체인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의 김경태 회장은 “서로 비슷한 규정이 많은 관련법규를 적

용할 때 상위법을 적용하는 것이 관례인데 각 구청이 상위법 적용을 외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각 구청, 구의회 등에 경과조치 인정, 민간탁아소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 등을 뼈대로 한 청원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교회 부설로 50개의 탁아소를 운영중인 기독교탁아문제공동대책위원회는 “시설신고가 교회탄압 측면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에 신고거부 입장을 취하고 있고, 가정 탁아원 5백여개가 회

원으로 가입돼 있는 기독교방송국 부설 가정탁아교육센터도 “영·유아보육법의 시행령, 시행규칙도 공포되기 전에 보사부가 시설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시행령, 시행규칙의 공포 뒤로 신고절차를 미루기로 결정해 신고율이 꽤 낮을 전망이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보사부 가정복지과 장옥주 심의관은 “아직 영·유아보육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이 완비되진 않았지만 상위법으로서의 효력이 있는데, 각 구청이 이를 잘못 해석한 것 같다”면서 “가급적 빨리 전국 각 구청에 3년 경과조치를 인정하도록 행정지침을 내려보내겠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정부 각 부처와 협의를 끝내는 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빠르면 8월께 공포될 예정이다.

주부클럽연합회 여성단체협의회 탈퇴통고

큰 단체로는 3번째...여협 위상 흔들릴 듯

대한주부클럽연합회(회장 조종숙)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여협에 통고했다.

주부클럽연합회의 여협 탈퇴는 88년 대한YWCA, 90년 가정법률상담소에 이어 전국적 조직을 갖춘 대규모 여성단체로는 세번

째 탈퇴로, 여성단체들의 협의체로서의 여협의 위상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59년 창립된 여협은 대한약사회, 전문직여성클럽, 대한미용사회 등 26개 직능단체만이 회원단체로 가입돼 있다.

주부클럽연합회는 “전국에 30

개 지부를 갖고 있는 자체 조직 관리에 주력하기 위해 탈퇴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여협이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소홀히한 데 따른 반발이라고 여성계는 풀이하고 있다.

한편 김경오 여협 회장은 “주부클럽연합회의 탈퇴를 여협 이사회에서 아직 결정짓지 않았다”고 밝히고 “앞으로 전국 15개 시·도 여협과 횡적인 유대관계를 공고히하는 등 전국적인 협의체로서의 성격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